

# 추가 체류에 따른 국외 여행 경비 보상 요구건

- 왕복 항공료 등 1백98만원 지급하라고 결정 -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글/오승건(소비자정보센터)



**지난** 해 12월 17일 김상우 씨는 가족 등 6명이 12월 24~27일 3박 4일 필리핀 마닐라를 여행하는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4백31만9천7백40원을 냈다. 12월 24일 현지 시각 23시 30분 경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다.

김씨의 일행인 9살 난 조카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민국 사무실에 연행됐다. 김씨는 아이의 삼촌임을 설명하고 입국허가를 받았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카의 어머니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등 가족 5명이 3일 동안 현지에 추가로 체류하게 됐다.

필리핀에 입국할 때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친권자가 동행해야 하며 동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도 여행사측이 이를 알리지 않아 추가로 체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가족이 추가로 체류한 비용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행사측은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며 배상을 거부한다.

## 【소비자 주장】

필리핀 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사는 여행자가 만 15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행 여부를 확인·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행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권을 압수당하고 온 가족이 3일 동안 추가로 필리핀에 체류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여행사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자 주장】

여행사는 수년간 필리핀 여행 상품을 판매 하면서 여행객들에게 필리핀 여행시 주의 사항을 고지해 왔다는 것이다. 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김씨와 동반하는 일행은 모두 가족이라고 했으며 예약 확인 과정과 여행 경비 결제시에도 어린이의 부모 동반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마닐라 공항 입국 수속시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김씨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귀국 예정일인 99년 12월 27일 현지 여

행사 대표가 필리핀 한인교민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미화 1천달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99년 12월 28일 어린이의 어머니가 필리핀에 입국해 문제를 해결하고 12월 29일 귀국할 수 있었는데도 김씨 일행 모두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여행 상품의 호텔 등급보다 훨씬 비싼 초특급 호텔에서 숙박했기 때문에 배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

필리핀에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가 동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여행사는 김씨와 여행 계약을 하고 수속을 밟는 과정에 몇 차례 일행중 어린이의 가족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명확하게 친권자가 동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99년 12월 28일 어린이의 어머니가 필리핀에 입국해 문제를 해결한 후 12월 29일 출국할 수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하루를 더 묵었고, 추가 체류할 때에도 여행 상품에 규정된 호텔 등급보다 월등하게 비싼 고급 호텔에 묵은 김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

그러므로 여행사는 김씨에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실질 경비 중 어린이 어머니의 왕복 항공료(80만원), 별금(8만원), 공중 등의 경비(10만원) 일체에다 호텔 투숙비(2백25만원) 중 1백만 원을 더한 1백9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 조정 결정 내용

여행사는 김상우 씨에게 2000년 4월 8일까지 1백98만원을 지급한다. ☺

XXXXX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는 여행사가

어린이의 어머니

왕복 항공료 80만원,

별금 8만원, 공중 등의

경비 10만원 등

98만원에다 호텔 투숙비

2백25만원 중

1백만 원을 더한

1백98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XXXXX